

『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9년 8월 24일

나. 발 의 자 : 권기만, 길윤옥, 김상조, 김익수
박광석, 박교상, 박순이, 임춘구
장세만, 전인철, 정근수 (11명)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9월 7일

제14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권 기 만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자진 납세의식 및 자긍심 고취로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지방세 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“용어” 정의(안 제2조)

-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,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,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부자,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등
- 성실납세자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(안 제3조, 제4조)
-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
-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,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,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
 -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 지급
-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
 -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
 -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시 납세담보 완화
 -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추천
 -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한 시기에 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
 - 시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,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

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정하였으며

-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·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,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
- 또한, 성실납세자에게 행정이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시와 납세자간 상생을 모색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지며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